

의안번호	2202323
의 퇴 인	권칠승 의원
회 답 일	2024.08.08.
추계번호	24C23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을 관리하여야 할 대상에 ‘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터’를 포함시키는 내용임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학교시설을 규정하면서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유지·관리의 기준, 점검 종류 및 시기, 점검 방법에 대해서도 동 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장관 고시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대상에 놀이터가 포함되어 이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관리기준 및 보수 필요시설의 종류와 소요 예산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한다)과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해당 고시에는 교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의 장은 소관 놀이터에 대하여 기존 「교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관리기준 및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 시설의 수 및 보수 등에 소요될 비용 등을 예측하기 곤란함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제37조(운동장 관리) ②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참고자료] 2023년 학생 수별 학급 수 현황(시도별·학교급별)

	20명 이하				20명 초과				학급 수 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합계
서울	7,263	1,404	2,639	11,306	11,104	7,095	6,414	24,613	18,367	8,499	9,053	35,919
부산	1,885	299	1,988	4,172	5,227	2,746	1,445	9,418	7,112	3,045	3,433	13,590
대구	1,483	590	1,057	3,130	3,996	2,010	1,641	7,647	5,479	2,600	2,698	10,777
인천	1,844	513	992	3,349	5,331	2,482	2,179	9,992	7,175	2,995	3,171	13,341
광주	1,478	181	321	1,980	2,550	1,622	1,427	5,599	4,028	1,803	1,748	7,579
대전	1,909	314	867	3,090	1,943	1,334	969	4,246	3,852	1,648	1,836	7,336
울산	945	148	379	1,472	2,163	1,173	944	4,280	3,108	1,321	1,323	5,752
세종	618	68	117	803	976	575	388	1,939	1,594	643	505	2,742
경기	5,452	963	2,546	8,961	27,496	12,756	11,445	51,697	32,948	13,719	13,991	60,658
강원	2,388	350	674	3,412	1,872	1,290	1,090	4,252	4,260	1,640	1,764	7,664
충북	1,710	364	461	2,535	2,666	1,463	1,250	5,379	4,376	1,827	1,711	7,914
충남	2,615	471	867	3,953	3,639	1,905	1,535	7,079	6,254	2,376	2,402	11,032
전북	2,405	490	978	3,873	2,763	1,654	1,291	5,708	5,168	2,144	2,269	9,581
전남	2,892	644	1,220	4,756	2,496	1,492	1,079	5,067	5,388	2,136	2,299	9,823
경북	2,497	700	1,377	4,574	4,116	2,277	1,734	8,127	6,613	2,977	3,111	12,701
경남	3,013	586	1,244	4,843	6,213	3,232	2,524	11,969	9,226	3,818	3,768	16,812
제주	560	85	107	752	1,340	689	605	2,634	1,900	774	712	3,386
전국 합계	40,957	8,170	17,834	66,961	85,891	45,795	37,960	169,646	126,848	53,965	55,794	236,607

주: 1) 2023년 4월 1일 기준

2) 특수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제외

3) 복식학급의 경우 해당 학급에 속하는 학년 중 가장 낮은 학년으로 분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